

2024년 제2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4년도 제2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직무내용
관리의사 (보건행정과)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5급)	1명	2년	주 40시간	○일반진료 ○예방접종 예진 ○건강진단서 및 검사결과서 판정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각종 보건사업 자문 등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기준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 요건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분야별 응시 자격기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관리의사 (보건행정과)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자격 : 「의료법」 제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은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지역보건의료기관 포함)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경력 ○우대사항 :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예시)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 및 복무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다음의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을 책정함.
 - ※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2024년 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주40시간기준)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가급 상당)		65,346
6급(나급 상당)	81,239	54,132
7급(다급 상당)	66,396	47,157
8급(라급 상당)	58,248	41,551
9급(마급 상당)	51,290	

※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의 경우 법령 상 하한액이 없어 여주시 자체방침에 따라 결정

- 임용예정 분야별 연봉액

채용분야	채용 직급	근무시간	연 봉	비고
관 리 의 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5급)	주40시간	78,415천원	하한액×120%

※ 관리의사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의 120%로 책정함. 단, 신규임용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수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연봉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복 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사업의 필요성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5. 시험일정 및 시험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4. 22.(월) ~ 4. 24.(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여주시청(행복민원과)에서 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하며, 뒷면 기재 절대 금지

· 우편봉투 겉면에 ‘2024년 제○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므로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접수장소 :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우)12619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일 시	장 소	
2024. 4. 30.(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재공고(연장공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시험관련 각종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 관련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인사부서에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가방법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여주시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 서류

○ 공통사항

-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 제출서류 접수 시 **스테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
-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5급(호),가급: 1만원/6-7급(호),나,다급: 7천원/8-9급(호), 라,마급: 5천원 - (방문접수) 여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여주시청 행복민원과)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 하며, 뒷면 기재 절대 금지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2장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3장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사항은 삭제) 	필수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필수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경력과 관련된 사업장(회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제출 	필수
8. 최종학력졸업(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모든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9.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원본 지참)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 →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해당자만 제출
10. 주민등록 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별지 제7호 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 	필수
11. 경력(제직)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비상근 여부, 비상근 시 1일, 1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 및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본 첨부 	필수
1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 (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만 제출
1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제10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 지원자 본인의 사전 확인 절차임 	필수
14. 기타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논문 등 분량이 많을 경우 경우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제(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해당자만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 졸업증명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함)
- 재공고 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는 기 접수 응시서류로 같습니다.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여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여주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887-2117)
 - 직무내용 관련 문의

분 야	채용직급	채용부서	연락처
관 리 의 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5급)	보건행정과	031-887-3603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본인은 (2024년 제2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급)					
여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5급(호)·가급 : 1만원 6·7급(호), 나·다급 : 7천원 8·9급(호), 라·마급 : 5천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시표 (2024년 제2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분야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급)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20년 월 일 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며, 정자 또는 워드로 작성한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여주시수입증지 :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등기우편 접수 시는 해당 금액만큼의 우편통상환 (우체국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5급,가급: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뒷면)

이력서 작성요령

-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란'을 추가하여 작성
- ◎ 제출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 ◎ 학위 작성시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작성(출신학교명 작성 불가)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성 명 :

< 작성요령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경력 및 직무기술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분량은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직무수행 계획서

○ 응시분야 :

○ 성명 :

< 작성요령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주요업무내용을 참고로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함.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아래 채용자격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 모두 표 하시고, 실무경력, 관련학과 등에는 내용을 기입()하세요. (**※미응시 분야는 삭제 필수**)
※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 표기 가능

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관리의사 (보건행정과)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5급)	<p>○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p>○추가 필수자격 : 「의료법」 제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p> <p>○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포함)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경력</p> <p>○우대사항 :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p>

응시자 성명 : (서명)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시험자료로 활용 ⇨ 응시자격요건 검증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0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시험자료로 활용 ⇨ 응시자격요건 검증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0년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여주시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여주시인사위원회(여주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등 각종 자격요건 검증 및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 시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 2024. (서명 또는 인)	

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여 주 시 장

<별지 제8호 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근무기간	년 월	주 근무시간	시간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해당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직급(위)	특이사항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담 당 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근무기간, 주 근무시간, 담당업무는 반드시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 (서명)

직무기술서

[관리의사, 일반임기제 의무5급]

근무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선발예정인원
여주시청	보건소	1명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진료 ○ 예방접종 예진 ○ 건강진단서 및 검사결과서 판정 ○ 감염병 관리 및 대응 ○ 각종 보건사업 자문 등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 ○ 상황인식 및 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과진료 및 예방접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관련 전문지식 ○ 지역건강 문제점과 활성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업무관련 지식 ○ 건강증진사업과 교육, 상담할 수 있는 기술 ○ 문서 작성 등을 위한 기본 OA 지식
------	---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관리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지역보건의료기관 포함)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경력 ▶ 우대사항 :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필수자격요건	「의료법」 제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은사람
결격/취업제한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8조 각 호와 관련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와 관련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기타 의료기관 취업제한 사유(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